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9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7조” 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윤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 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 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65조 ----- ----- ----- ----- ----- ----- -----.</p> <p><u>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 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으로 구성한다.</u></p>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